

1. 개정이유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,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식 내 단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벤처기업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(안 제5조제1항제1호, 제5조제4항, 제7조의2제1항)

- 1)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(제11조의13 신설)으로 기존 가지조문(제11조의13 ~ 제11조의21)이 순연됨에 따라,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.

나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서식 수정(별지 제3호 서식)

- 1)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식의 단어를 일부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8. 18. ~ 10. 06.) 진행 중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특이사항 없음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영 제11조의17제1항”을 “영 제11조의18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영 제11조의18제2항”을 “영 제11조의19제2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1조의19제1항”을 “영 제11조의20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·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제주특별자치도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 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 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 한다. 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 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5조(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 으려는 건축물이 영 제11조의 <u>17제1항</u>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 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.	1. ----- ----- 영 제11조의1 <u>8제1항</u>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
②・③ (생 략) ④ <u>영 제11조의18제2항</u>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 ⑤ (생 략) 제7조의2(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) ① <u>영 제11조의19제1항</u>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②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영 제11조의19제2항</u>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제7조의2(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) ① <u>영 제11조의20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